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
----------	-----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7일

발 의 자 : 김용석, 김광수, 권영희, 장상기
송명화, 김제리, 황인구, 송도호
이상훈, 봉양순, 김호평, 이동현
이현찬 의원(13명)

1. 제안이유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화장실 등”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시와 자치구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자치구,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

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추진 내역

조례안 규정	비 고
<p>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사자치구투자출연기관 가용자원 총동원, 1일 1회이상 점검 실시> ▶ 공공시설 화장실(20,554개소) :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 담당미화원 등 8,157명이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결과 기록(1일 1회이상 책임점검) ▶ 민간개방 화장실(3,803개소) : 사회적일자리 또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지역 인적자원활용 주2회이상 정기점검 시행 ▶ ' 18 예산 : 400백만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활용</p>
<p>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p>	<p><안심보안관 활용, 특별 관리대상화장실 수시 집중 점검> ▶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전수조사 후 특별 관리대상 선정 : 약 1천개소(구별 40개소 내외) ▶ 신고 및 점검요청 화장실은 즉시 안심보안관 출동 점검 실시</p>
<p>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p>	<p><민간화장실 자체점검 및 지원책> ▶ 자체점검 민간화장실에 대한 「서울시 점검 확인제도」 시행 : '점검 확인증' 표식 제공 및 부착, 점검 장비 100대 임대 ▶ ' 18 예산 : 400백만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활용</p>

조례안 규정	비 고
<p>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p>	<p><여성안심보안관 운영> ▶ 고용형태 : 사회적일자리사업, 월 950천원(1일 6시간, 주3일) ▶ 주요업무 : 공용화장실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캠페인 ▶ 운영실적 : 불법촬영점검 122,593개소, 예방캠페인 4,491회 ▶ ' 18 예산 : 778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 일부</p>
<p>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p>	<p><안심이 앱 활용한 불법촬영장비 신속 신고시스템 구축> ▶ 안심이 앱 기능에 불법촬영장비 설치 의심장소 신고 시스템 추가 구축 : 관제센터→관할경찰서→여성안심보안관으로 이어지는 신고대응 체계 마련 ▶ 신고된 민간화장실 점검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공동대응 ▶ ' 18 예산 : 1,397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 일부</p>
<p>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공중화장실 전수조사> ▶ 공중화장실 1차 실태조사 : ' 17.7월~9월 ▶ 공중화장실 2차 실태조사 : ' 18.8월~9월 ▶ 조사내용 : 위치, 남녀구분, 개방시간, 장애인화장실 유무, 비상벨 설치 여부 등 ▶ ' 18 예산 : 164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생활보건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사업비</p>
<p>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p>	<p><여성안심보안관 등 교육 추진> ▶ 불법촬영장비 운용 교육 및 실습 등 관련 교육 실시 : ' 18. 9월 ▶ ' 18 예산 : 100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 일부</p>
<p>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불법촬영 인식개선 및 불안감 해소 활동 등 홍보> ▶ 불법촬영 관련 경고 메시지 전파 및 서울시 근절노력 홍보 : 130개 지하철역사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수준, 신고방법 등 게시 서울시 불법촬영 근절노력 홍보 예정(' 18. 9월중 계획) ▶ 불법촬영 STOP! 인식개선 캠페인 :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전개(' 18.10월~) 동영상 콘테스트 우수작 활용(' 18.10월 온라인 공모) 1000명의 인터넷 시민감사단,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통 감시활동 강화</p>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사업설명서 등